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2018. 1. 25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시험·인증 규정	4
제1절 신청 관리	6
제2절 시험 관리	8
제3절 인증 관리	13
제4절 인증단말기 사후관리	16
제 3 장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규정	19
부칙	20
<별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절차	21
<별표 2>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절차	22
<별표 3>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제출문서	23
<별표 4> 경미한 보안기능 변경	24
[별지 제1호 서식] 시험자 서약서	25
[별지 제2호 서식] 제출물 인수인계증	26
[별지 제3호 서식]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	27
[별지 제4호 서식] 공동 신청인 명부	28
[별지 제5호 서식] 불만 처리 신청서	30
[별지 제6호 서식] 시험신청 접수증	31
[별지 제7호 서식] 시험요구사항 점검결과	32
[별지 제8호 서식] 제출물 개선 요청서	33
[별지 제9호 서식] 시험결과보고서	34
[별지 제10호 서식] 인증위원회 검토의견서	36
[별지 제11호 서식] 인증위원 서약서	37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서	38
[별지 제13호 서식] 인증마크	39
[별지 제14호 서식] 인증마크 사용신청서	40
[별지 제15호 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41
[별지 제16호 서식]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42
[별지 제17호 서식]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단순 형상 변경)	44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제정 2015-07-15
개정 2017-06-14
개정 2018-01-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부가통신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인증하기 위한 절차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함은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설치되거나 가맹점 사업자가 사용하는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단, 실시간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로서 신용카드 번호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말기로 보지 않는다.
2. “기술기준”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갖추어야 하는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말한다.

3.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이라 함은 기술기준에 관련한 세부 기준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정한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세부 기술기준을 말한다.
4. “보안기능”은 단말기에서 보안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구현된 기능으로 통상적으로 기술기준의 “제3장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신청기관에서 구현한 단말기의 기능을 말한다.
5. “단말기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함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을 준수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가맹점에 유통 및 유지·보수하는 기관/업체이다.
6. “개발업체”라 함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기술된 단말기 제품의 운영환경 및 보안기능을 참조하여 제품을 구현하는 기관/업체이다.
7. “부가통신업자(Value Added Network)”라 함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8. “신청기관”이라 함은 “단말기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 “개발업체”, “부가통신업자(Value Added Network)” 등 시험기관 및 시험업무 수탁 기관에 시험을 신청하거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업체를 말한다.
9. “시험업무”라 함은 신청기관이 시험을 신청하는 단말기가 기술기준의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인증기관 혹은 인증업무 수탁 기관에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0. “시험기관”이라 함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단말기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를 말한다.
11.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라 함은 시험기관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 시험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라 함은 시험기관 혹은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 제출한 시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신청기관이 시험 신청한 단말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13. “인증기관”이라 함은 “시험기관” 및 “시험업무 수탁 기관”의 시험업무를 감독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단말기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협회를 말한다.
14. “인증업무 수탁 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인증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5. “인증서”라 함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단말기를 시험하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단말기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16. “단말기 등록”이라 함은 인증서를 획득한 인증 단말기를 협회의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 단말기의 식별정보와 함께 인증번호를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이 단말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7.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이라 함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인증단말기 관리시스템으로 인증서를 획득한 단말기를 등록하고, 신용카드 거래 발생시, 카드사에게 신용거래 요청에 사용된 신용카드 단말기가 인증 단말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증기관 혹은 인증업무 수탁 기관(이하 인증기관 등), 시험기관 혹은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하 시험기관 등), 신청기관에 적용한다.

제 2 장 시험·인증 규정

제4조(기본목표)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제도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보안성이 검증된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을 통한 국내 금융환경의 안전성 확보
2. 금융 네트워크 환경의 정보보호 수준 제고
3.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신용카드 번호 등 중요한 정보유출의 원천적 차단

제5조(시험·인증 원칙) 시험기관 등과 인증기관 등은 시험·인증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적절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객관성 : 주관적인 견해를 배제하고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험·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정성 : 단말기 공급업체, 개발업체,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공정한 시험·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적절성 : 시험결과가 기술기준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4. ~투명성 : 정해진 절차에 맞게 시험·인증 과정이 진행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인증 절차)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련기관 및 협회 역할) ①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관련기관은 인증기관 등과 시험기관 등 및 신청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협회는 위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
2.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시험 및 성적서 발급
3.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시험결과 인증 및 인증서 발급
4. 인증 단말기 목록 관리

제8조(비밀엄수) ① 시험담당자 및 인증담당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발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험기관 등과 인증기관 등은 시험 및 인증업무 최초 수행 시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고 시험업무 관련 보안교육을 받는다. 다만, 보안 서약서 작성 시 시험기관은 시험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한다.

제9조(제출물의 관리) ① 개발업체와 시험기관 등이 제출물을 인계인수 할 경우에는 시험기관 등의 기술책임자 확인 하에 제출물 인수인계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 등은 민감한 제출물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감하지 않은 제출물은 개발업체의 사전 동의 및 입회하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제출물의 분류) ① 제출물은 유출될 경우 개발업체에 손해를 미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밀 : 개발업체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문서 또는 제품으로서 유출될 경우 개발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출물
 2. 일반 :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제출물
- ② 시험기관 등은 개발업체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전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제출물을 분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물의 표시) ① 기밀은 다음과 같은 표시를 제출물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한다.



②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제품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제12조(제출물의 보관) 제출물 중 기밀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일반은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한다. 다만, 캐비닛에 보관할 수 없는 제출물은 그에 상응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절 신청 관리

제13조(시험 신청) ① 신청기관이 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출물을 시험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은 제출문서 1부<별표 3>와 시료를 제출한다.

② 신청기관은 제출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관이 제공한 제출물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신청기관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물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공동신청) ①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중 1개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정하고, 여타 기관은 공동 신청인 명부[별지 제4호 서식]에 연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표기관은 인증 단말기에 대해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제15조(비용 납부) ① 신청기관은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수수료 및 사후관리 비용, 인증서 발급 비용 등 시험 및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시험기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험기관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을 위해 신청기관 방문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시험수수료와 별도로 신청기관이 시험기관 등의 출장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출장의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할인 등 수수료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험환경 제공)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등으로부터 시험환경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 제기) ① 신청기관은 시험업무에 대하여 이의·불만·분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만 처리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기관 등에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시험기관 등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절 시험 관리

제18조(시험업무 위탁) ① 협회는 일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시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기준 및 방법은 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험업무 수탁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기술책임자(선임시험자 중 지정) 1명과 암호전문가(암호관련 분야 3년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한, 선임시험자 2명이상, 총 5인이상 시험실무 인력 보유
 2.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시험공간 및 장비 등 확보
 3. 기타 협회가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시험자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임시험자 : 다음 2호의 초급시험자 자격 취득 후 보안기능 시험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10회 이상 정보보안 관련 기능 평가 및 시험 수행에 참여한 자.
 2. 초급시험자 : 컴퓨터, 보안 등의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개발·시험·품질보증 등 유관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2회 이상 정보보안 관련 기능 평가 및 시험 수행에 참여한 자

제19조(시험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 ① 협회는 시험업무 수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험관련 규정의 준수
2. 시험업무 수행의 적절성
3. 기타 시험업무 수탁 기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업무 수탁 기관은 전항의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업무 수탁 기관의 자격정지) 협회는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 수탁 기관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9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시험업무 수탁 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업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된 경우

제21조(시험업무 수탁 기관의 자격취소) 협회는 시험업무 수탁 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험업무 수탁 기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시험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시험업무 수탁 기관 자격정지 처분을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신청업무 수탁 기관의 지적재산권 관련정보를 신청기관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

4. 시험업무 수탁 기관이 파산하거나 자격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기타 제19조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시험업무 수탁 기관으로서 자격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시험업무 수탁 기관 자격취소시 유의사항) 시험업무 수탁 기관은 자격이 취소된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시험 신청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출물 사전검토) 시험기관 등은 제출물에 대한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신청 접수 전에 신청기관의 제출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신청 접수) 시험기관 등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시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시험신청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시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물 사전검토를 통과하지 않은 경우
2.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신청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5조(시험업무 수행) ① 시험기관 등은 시험대상 제출물이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시험한다.

② 시험기관 등은 시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시험요구사항 점검결과[별지 제7호 서식]
2. 제출물 개선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
3. 시험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③ 시험기관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관에 시험환경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 등은 보안기능이 동일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 일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1항에 의해 함께 신청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한한다.

제26조(시험 소요일수) ①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복잡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서 시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5조 4항에 의해 일괄 신청된 신용카드 단말기가 추가되는 경우 1개 모델당 2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시험중단) ① 시험기관 등은 시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파산,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시험기관 등이 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발적으로 시험을 철회한 경우

3. 제출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소송 결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확인될 경우

4. 신청기관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험 진행에 차질을 야기하는 경우

② 시험중단에 따른 기납부된 시험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제28조(재시험) ① 신청기관은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 2회까지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재시험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출물을 시험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시험기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제출물의 반환) 시험기관 등은 인증완료 또는 시험이 중단된 경우에 제출물을 신청기관에 반환한다.

제30조(실태점검) 시험업무 수탁 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협회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응하여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절 인증 관리

제31조(소요일수) ① 시험기관 등은 시험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인증기관 등에 제25조 제2항에 의해 작성된 시험결과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등은 시험기관 등의 시험결과가 제출되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 수행) ① 인증기관 등의 인증담당자는 시험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 검토 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시험기관 등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일수는 제31조 제2항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의 제정 및 개정
2. 시험 결과가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단말기 시험가이드 제정 및 개정
4. 시험업무 수탁기관 자격 취소 및 추가 지정 최종 승인
5. 그 밖에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담당 임원이 역임한다.
3.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경력 2년 이상)를 내·외부 위원으로 선임 할 수 있다.

가. 내부 위원 : 신용카드사 관련 업무 부서장 등 2인 이내

나. 외부 위원 : 금융·정보 보안 전문가, VAN업계 추천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3인 이내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 임기를 포함해 그 임기는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일시, 종합 심의의견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33조 제1항 2호의 경우 필요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회의의 진행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여 의사록을 작성 기록하고, 위원장이 서명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여신금융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은 그 수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33조 제2항 제3호의 위원에게 심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료는 1회 회의 참석 시 세전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세전 30만원으로 한다.

제4절 인증 단말기 사후관리

제35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교부) ① 인증기관 등은 인증에 통과한 단말기에 대하여 신청기관(이하 “인증서보유기관”)에 인증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인증마크[별지 제13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인증마크는 인증서보유기관이 인증마크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인증기관 등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교부한다.

② 인증기관 등은 인증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기관이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인증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 발급을 연기할 수 있다.

제36조(현장실사) ① 시험 및 인증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인증서보유기관의 제조·개발환경에 대해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사항목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현장실사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인증서보유기관이 부담한다.

제37조(인증업무 위탁) ① 협회는 단말기 인증업무의 일부를 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회의 업무위탁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인증 단말기 목록 공개) 협회는 인증된 단말기 목록을 공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인증 단말기 관리) ① 인증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 등은 인증서 효력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인증서보유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인증된 단말기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2. 인증된 단말기의 보안기능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한 경우
3. 인증된 단말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40조(변경시험) ① 인증서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증된 단말기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시험을 통하여 인증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 경미한 보안기능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보안기능 변경은 <별표 4> 참조)
2.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취약점을 개선하는 경우
3. 보안기능이 동일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② 인증서보유기관은 변경시험 신청 시 시험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제출물을 시험기관 등에 제출하고 시험기관 등은 다음의 항을 시험한다.

1. 경미한 보안기능변경이 보안기능 및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경미한 보안기능변경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
3. 변경된 단말기 및 소프트웨어의 모델명과 버전을 확인한다.

- ③ 시험기관 등은 변경시험 결과를 인증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 ④ 인증기관 등은 변경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시험결과가 타당하면 단말기의 인증서 정보를 수정하여 재발급하고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 재등록한다.
- ⑤ 변경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시험기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인증서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증된 단말기의 단순한 형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회로 직접 등록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을 제출하여 등록 한다.
 - 1. 내부 부품 변경이 없는 단순한 외관 변경
 - 2. 단말기나 카드리더기의 주변장치 변경(액정, 전원 부품, 프린터 등)
 - 3. 외부 기기 입출력 연결 장치의 구성 요소 단순 변경(USB 등)

- 제41조(갱신시험)** ① 인증서보유기관은 인증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시험을 통하여 인증서 효력을 갱신할 수 있다.
- ② 인증서보유기관은 갱신시험을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와 제출물을 시험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갱신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시험기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제42조(인증서 재발급)** ① 인증서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안이 발생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증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 1. 인증서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 2. 인증서의 사용 권리를 양수한 경우
 - 3. 인증서보유기관이 상호를 변경한 경우
- ② 전항 제2호에 의거 인증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인증서 소유권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3조(인증서효력 정지)** ① 인증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1. 인증서보유기관이 제39조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가 사용된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인증서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 등은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 단말기를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다.

- 제44조(인증서 취소)** ① 인증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인증서보유기관에 통보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인증 받은 경우
 - 2. 인증된 단말기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3. 인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해당 단말기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한 경우
 - 4. 인증서 효력정지 처분 기간 내에 효력정지 사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인증기관 등은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 단말기의 인증서번호 등을 확인하여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한다.
- ③ 인증이 취소된 단말기의 인증서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장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규정

제45조(기본목표)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규정은 보안성이 검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안전한 등록 및 사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등록관리 절차)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7조(관련기관) ①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관련기관은 인증기관 등, 카드사, 공급업체, 부가통신업자, 인증서보유기관, 가맹점으로 구분한다.

② 협회는 위탁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 단말기 등록 및 관리
2. 인증 단말기 유통 및 사용 감독

제48조(단말기 등록) 인증기관 등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서보유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한 이후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접수받아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 인증된 단말기를 등록한다.

제49조(단말기 유통) ① 부가통신업자와 공급업체는 공급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인증기관에 등록된 단말기인지 확인하고 각 가맹점에 단말기를 유통한다.

② 부가통신업자와 공급업체는 1대의 단말기에 1개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단말기 고유번호가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단말기 교체) 공급업체는 공급된 단말기가 제40조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단말기로 교체하고 유지·관리한다.

제51조(단말기 등록 삭제) 인증기관 등은 인증서 효력이 정지, 취소된 단말기는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삭제하여 인증서 효력이 유효한 단말기만 목록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제52조(거래 승인) ① 부가통신업자 및 카드사는 단말기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단말기의 경우에만 승인한다.

② 부가통신업자와 카드사는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 승인 시 단말기 정보를 제공한다.

제53조(실태점검) 공급업체 및 카드사는 매년 실시되는 인증기관의 단말기 등록 관리 실태점검에 응하여 등록관리 및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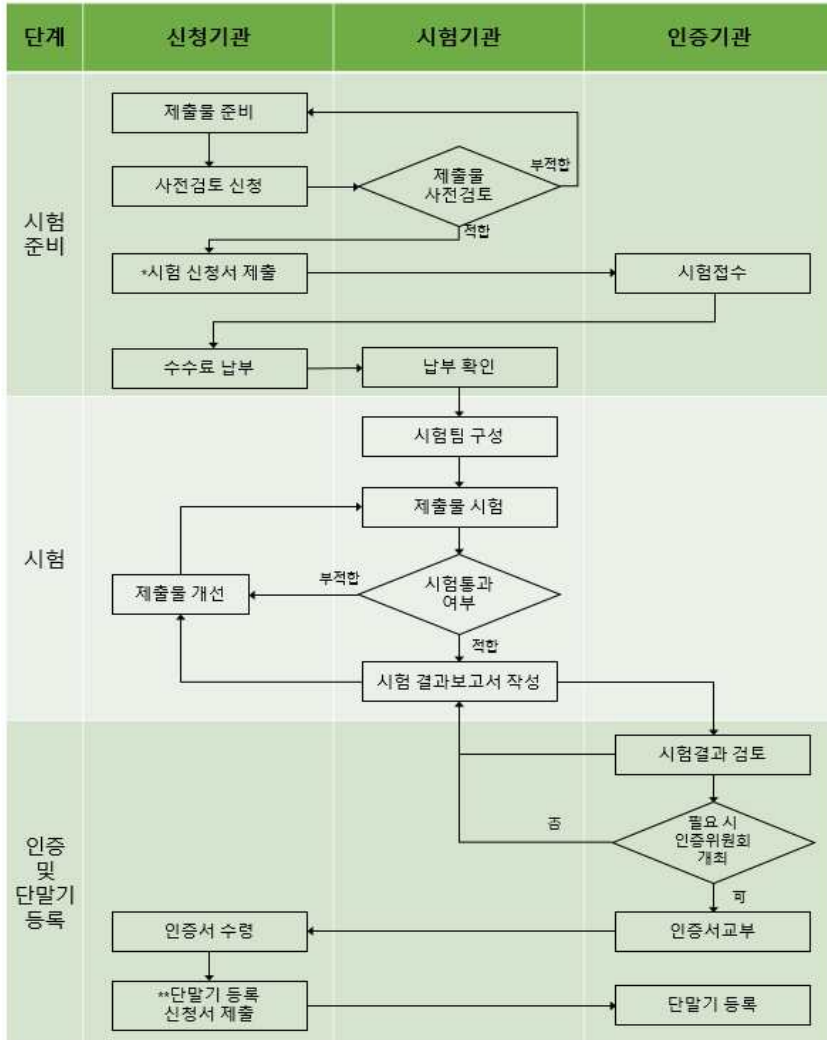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 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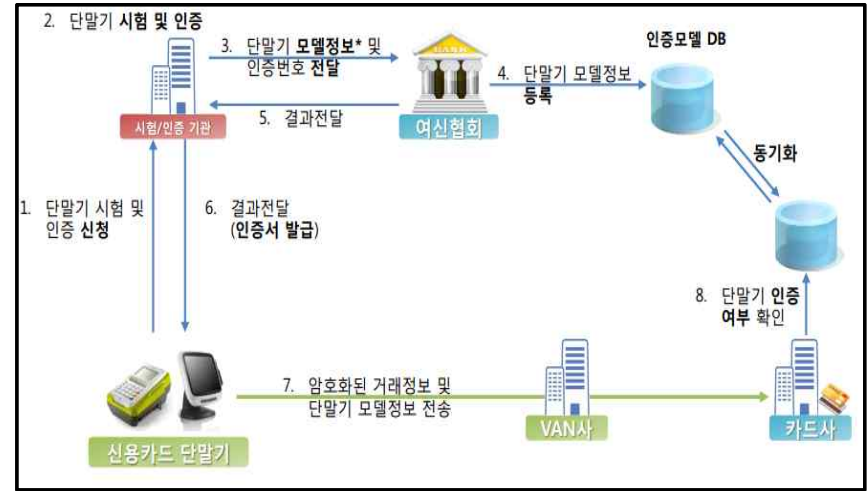
③ (개정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5일 개정되었다.

<별표 1>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절차



* 공급업체, 개발업체,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가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표 2> 인증 단말기 등록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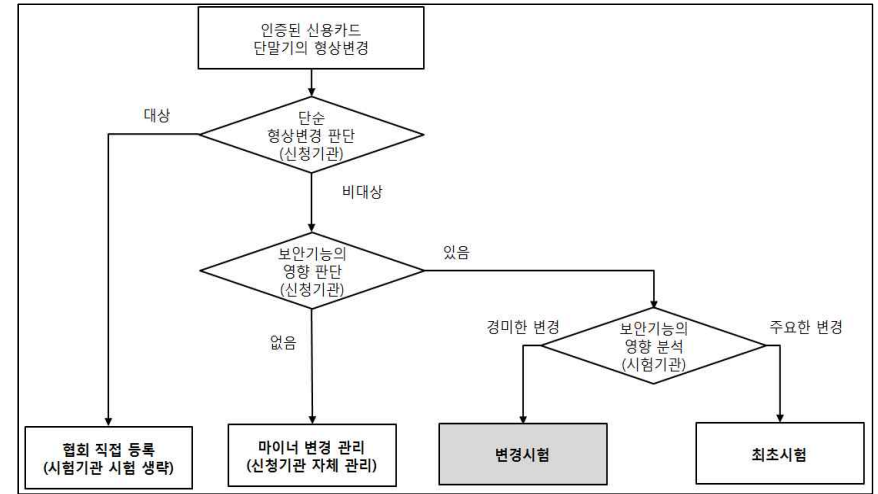


<별표 3>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제출문서

제출문서 목록

문서명	기술내용	신청구분에 따른 제출		
		최초	재	변경/갱신
시험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
체크리스트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	○	○
기술기준 준수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제품 형상 식별 ※ 개발업체, 제품군, 모델명, 버전 등 · 신청제품 운영환경 ※ 시스템(HW/SW) 요구사항, 네트워크 구성 등 · 기술기준에 대한 신청제품 보안기능 구현 사항 ※ 암호메커니즘의 경우 구현시 참조한 표준 명시 	○	○	○
설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관점의 보안기능 구현 내용 ※ HW 구성도 및 도면, 보안기능 동작 설명 · 소프트웨어 관점의 보안기능 구현 내용 ※ 모듈수준으로 보안기능 동작 설명 	○	○	○
암호프로토콜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 암호 프로토콜 설명 ※ 제품 생명주기별 암호키 생성/분배/파기 절차 · 민감한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세부 절차 설명 	○	○	○
인터페이스 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기술 ※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	○	○
운영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개요 ※ 제품군, 모델명, 버전, 운영환경 등 · 사용자 역할에 따른 기능 · 인터페이스(메뉴)별 사용방법 및 매개변수 등 ※ 에러메시지 및 대응방법 포함 	○	○	○
시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환경 ※ 제품 정보, 네트워크 구성, 시험도구 등 · 신청제품의 보안기능 시험 내용 ※ 시험목적, 시험도구, 절차, 시험결과 등 · 신청제품에 대한 자체 취약성 분석 내용 ※ 목적(취약점), 분석도구, 절차, 분석결과 등 	○	○	○
보안영향 분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또는 최초시험) 제품 개요 ※ 인증 정보, 이전 변경/갱신 내용 등 · 변경/갱신(또는 최초시험 후 보완된) 내역 ※ 변경 전후 시스템 구성, 변경된 보안기능, 변경 사유 및 내용, 변경된 소스 및 설명, 변경사항에 대한 시험결과, 변경된 제출문서 내용 등 	×	○	○

<별표 4> 경미한 보안기능 변경



접 수 번 호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서			
제 호							
신 청 인	① 신청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동신청					
	② 상 호		③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④ 주 소	□□□-□□□					
	⑤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⑥ 부서명/담당자		연락처	전 화 :			
시 험 대 상 단말기	⑦ 단말기명		⑧ 종 류	<input type="checkbox"/> POS <input type="checkbox"/> CAT <input type="checkbox"/> 카드리더기			
	⑨ 준수 기준						
	⑩ 단말기식별번호 (모델명 및 버전)		⑪ 운영체제				
	⑫ 일괄신청 (일괄시험 신청시 아래 내용 작성 요망)						
	단말기식별번호 (모델명 및 버전)		단말기식별번호 (모델명 및 버전)				
⑬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시험 <input type="checkbox"/> 재시험 <input type="checkbox"/> 갱신시험 <input type="checkbox"/> 변경시험		⑭ 인증서번호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험기관장> 귀하							

시험신청서 작성요령

-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신청 형태에 따라 표기를 하고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공동신청인 명부를 추가로 작성한다.
 - 신청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의 상호 또는 명칭 기재)
 - 신청인이 신용카드 단말기 개발업체, 공급업체, 부가통신업자, 기타를 구분하여 모든 해당항목에 표기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신청인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업무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한다.
 - 신용카드 단말기의 명칭을 기재한다.
 - 시험신청 제품의 종류를 표기한다.
 - 준수기준은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 및 시험요구사항을 버전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 신용카드 단말기의 모델명과 버전번호 등 식별번호를 기재한다.
 - 신용카드 단말기의 운영체제 명칭과 버전번호를 기재한다. 운영체제가 2종류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한다.
 - 일괄신청하는 단말기를 ⑩과 같이 기재한다.
 - 다음의 시험신청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 최초시험 : 처음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신청하는 경우
 - 재 시험 : 시험 항목 중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여 시험 중단 후, 다시 시험 신청하는 경우
 - 갱신시험 : 인증서 효력을 갱신하기 위하여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시험 : 인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기능이 변경 등으로 시험되는 경우
 - 갱신 및 변경시험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부여받은 인증서 번호를 기재한다.

공동 신청인 명부				
신청인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부 서 명 : 전 화 : 이 메 일 :
신청인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부 서 명 : 전 화 : 이 메 일 :
신청인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부 서 명 : 전 화 : 이 메 일 :
신청인	상 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대 표 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부 서 명	부 서 명 : 전 화 : 이 메 일 :

불만 처리 신청서

신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단말기명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이의 <input type="checkbox"/> 불만 <input type="checkbox"/> 분쟁		
<p style="text-align: center;">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이의, 불만, 분쟁) 해결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시험기관장〉 귀하</p>		

시험신청 접수증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담당자		
신청인	업체명	
	성명	
	연락처	
단말기명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시험 <input type="checkbox"/> 재시험 <input type="checkbox"/> 갱신시험 <input type="checkbox"/> 변경시험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시험기관장> </div>		접수인

시험요구사항 점검결과

구분	시험요구사항 점검항목		적합여부
	번호	내용	
필수	-	신청하는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명시해야한다.	○
신용카드 거래승인	3.1	POS 단말기는 ISO7816에서 규정한 ID-1 TYPE 형태의 카드가 이용되는 경우 EMV 거래로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 형태의 카드가 이용되는 경우에도 POS 단말기는 본 표준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비정상적 fall-back거래의 금지(정상적인 fall-back거래는 예외적으로 가능)	○
		※ 번칙적 M/S 거래의 금지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제출물 개선 요청서

접 수 번 호			
단 말 기 명			
요청 차수	()차	요청 날짜	
개선 요청 내용			
관련 제출물			
<p>위와 같은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발의자 (서명 및 인)</p> <p style="text-align: right;">확인자 (서명 및 인)</p>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관리 번호	/
----------	---

시험결과보고서

<대상 단말기명>

년 월 일

<시험기관명>

제 1 장 개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규정, 기술기준 및 시험요구사항
2. 시험결과보고서 개요
3. 신청기관
4. 시험기관
5. 시험일정
6. 참조 문서
 - 6.1. 기술기준 및 시험요구사항
 - 6.2. 제출물 목록

제 2 장 대상제품 구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단말기 식별 및 구성요소
2. 단말기의 상세 설계 구조도
3. 단말기 운영환경 정보
4. 단말기의 시험 범위

제 3 장 시험개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시험 방법, 기법, 도구 등에 대한 설명
2. 기술기준에 따른 각 시험 절차서
3. 제출물 개선 요청 내용

제 4 장 시험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시험결과 요약
2. 시험결과(적합/부적합) 선언

[별지 제10호 서식]

인증위원회 검토의견서

안전번호		
심의결과	可	
	否	
검토항목		검토의견
시험결과보고서 내용의 조리성 및 일관성		
적절한 보안기능 제공 여부 - 취약성 대응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보안기능시험 결과 - 시험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취약성시험 결과 - 시험방법의 적절성 및 타당성		
		년 월 일
인증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인)

인증위원 서약서

본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의거 인증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인증위원회의 안전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다음 사항에 대해 심의 중은 물론 심의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 심의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 신청기관 및 제품명
- 보안기능 구현 및 취약성 대응방법 등 제품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可·否) 등 심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심의 대상 제품의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위원회 위원 자격 박탈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신금융협회장 귀하

계 호



인 증 서

제품유형 :
모델명 :

신청기관 :
인증번호 :
인증일자 :
만료일자 :
시험기준 :



위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의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접수번호		인증마크 사용신청서	
제 호		구 분	
신청인	상 호		<input type="checkbox"/> 개발업체 <input type="checkbox"/> 공급업체 <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부 서 명	부 서 명 : 전 화 : 이 메 일 :
제품 종류	<input type="checkbox"/> POS <input type="checkbox"/> CAT <input type="checkbox"/> 카드리더기		
단말기명			
인증서번호			
신청 수량			
<p>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여신금융협회장 귀하</p>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담 당 자	이 름 :	
		전 화 :	
		이메일 :	
재발급 사유	사유	발생일자	내용
	<input type="checkbox"/>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인증서의 사용 권리를 양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인증서보유기관이 기관명을 변경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 제품	단말기명		
	인증서번호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신금융협회장 귀하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신청서				
신청인	① 회사명			
	② 주 소	□□□-□□□		
	③ 대 표 자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대표번호	전화 :	팩스 :	
등록 대상 단말기	⑥ 단말기명			
	⑦ 인증서번호			
⑧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최초등록 <input type="checkbox"/> 정보갱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등록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여신금융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시험성적서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 해당하는 빈칸에 ☑와 같이 표기한다.
2.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청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의 상호 또는 명칭 기재)
 - ② 신청인의 주된 사업장 주소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③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④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대표신청인)
 - ⑤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업무 담당자의 대표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한다.
 - ⑥ 신용카드 단말기의 명칭을 기재한다.
 - ⑦ 이전에 부여받은 인증서번호를 기재한다.
 - ⑧ 다음의 등록신청 구분에 따라 표기한다.
 - 외관 : CAT, 일체형POS, 카드리더기의 단순한 외관 변경시
(단, 펌웨어 및 내부 부품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변장치 : CAT에 포함된 액정, 전원부품 및 프린터 변경 및 카드리더기에 포함된 액정, 전원부품 변경시
 - 입출력 부품 : USB타입 ↔ Serial타입 간 변경시
(단, 입출력 포트 추가로 인한 변경은 시험업무 수탁기관을 통해 확인)